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554호 2016. 9. 8.(목)

선 결	기관의 장

조 례

거창군 조례 제2016-892호 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 - 84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9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 - 879호 수용재결에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1

거창군 공고 제2016 - 895호 토석채취 신청사항 인근주민 공람 12

이 첨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6일

거창군수

1. 조 례 명 : 「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」

2. 제정이유

- 거창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군수의 책무 등. (안 제1조 ~ 제5조)
- 해외통상자문관의 위촉 등. (안 제6조 ~ 제8조)
- 수출농가 및 관련 기관 등 지원. (안 제9조 ~ 제12조)

4. 입법예고기간 : 2016. 9. 7. ~ 2016. 9. 28.

5. 「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」안 : 붙임

6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6

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**【☎055-940-8263, 팩스 940-8229 ,이메일 iamjsb@korea.kr】**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산수출유통담당 **【☎(055)940-8263】**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산물 등”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부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물품을 말한다.
2. “농산물 등 수출품”이란 거창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, 수산물, 특산물, 임산물 또는 거창군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(공장 포함)이 소재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농식품으로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.
3. “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”이라 함은 중앙정부, 경상남도 및 거창군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) ① 군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,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농산물 등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농산물 등의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등을 생산·공급하여 수출 경쟁

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, 농업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.

제4조(농산물 등 수출촉진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촉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촉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농산물 등 수출촉진협약) 군수는 필요시 농산물 등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수출업체 및 전문가와 농산물 등 수출협의를 할 수 있다.

제2장 해외통상자문관의 위촉 등

제6조(해외통상자문관 위촉) ① 군수는 수출시장 개척, 수출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해외통상자문관(이하 “통상자문관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1. 무역업·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
2. 국제교류·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.

제7조(통상자문관의 기능) 통상자문관은 거창군이 해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 수행
2.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농가 및 업체의 수출업무 지원
3. 농가 및 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·자문 제공

4. 통상대표단, 국제교류단,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거창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
5. 문화예술·교육·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
6.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
7. 그 밖에 거창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원

제8조(경비지원)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거창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
2. 거창군이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제비 등 실비
3.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
4.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

제3장 수출농가 및 관련 기관 등 지원

제9조(해외시장 개척) 군수는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
2.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
3.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
4. 해외 판촉행사 개최지원
5.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
6.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농산물 등 수출기반 확대) ① 군수는 거창군 농산물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
2.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

3.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

4. 농산물 등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등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)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

2.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

3. 수입 바이어(buyer) 및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

4. 농산물 등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

5.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

6.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(Net-Work)형성지원 등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수출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)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, 농어업인, 생산자조직,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9. 7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67 외 8건(부여 9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259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773-47	2009-12-28	2016-09-07	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	
2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616, 616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2길 25-18	2009-04-01	2016-09-07	연교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	
3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175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하곡2길 148-53	2009-04-01	2016-09-07	하곡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	
4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673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원신기길 47-112	2009-04-01	2016-09-07	신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5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66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29	2009-04-01	2016-09-07	감악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마을 아래에서 소를 이룬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6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1406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368	2009-04-01	2016-09-07	대현리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7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0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67	2009-04-01	2016-09-07	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세번째 도로	
8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068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137-21	2009-04-01	2016-09-07	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9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368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길 15-18	2009-04-01	2016-09-07	마을 앞에 박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경상남도지사가 시행하는 「장기-우혜간 도로확·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6. 9. 1.

거 창 군 수

- 사 업 명 : 장기-우혜간 도로확·포장공사
-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
- 열람 기간 : 2016.09.01. ~ 2016.09.19
-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 - 거창군청 건설과(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), ☎ 055-940-3534
- 의견제출기간 : 2016.09.01. ~ 2016.09.19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
 -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693-2번지 등 18필지(3,705.4㎡)
- 토지소유자 : 변*석 등 18명
- 기 타 :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

공 고

□ 제 목 : 토석채취 신청사항 인근주민 공람

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45-1번지의 2필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정취)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을 실시합니다.

○ 토석채취허가 신청내용

신 청 지			면 적(m ²)			지 목	기 간	용 도	신 청 수 량 (m ³)	신 청 자	
면	리	지번	지적	신청	잔여					주소	성명
계			137,057	29,804	107,253				119,000		
신원	양지	산45-1	49,688	17,978	31,710	임	2016.9.~2019.8. 31	토 사 채 취 용 (레 콘 미 용)		산청군읍수로 288 산수	(주)대현산업 김수만
		산45-3	52,857	5,188	47,669	임					
		산131	34,512	6,638	27,874	임					

○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간

○ 주민의견 제시기간 및 방법

- 토석채취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또는 신원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위성사진 1부 끝.

2016. 9. .

거 창 군 수

○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위성사진

